

드래프트 세칙

- ① 2018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②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과 입단 첫해연봉(기본급연액 및 수당)은 다음과 같다.

<여자>

지명순위	계약기간	계약금	기본급연액 (세금포함)
1라운드	1년~5년	1~4순위 - 7,000만원	2,400만원 이상
		5~8순위 - 5,000만원	
2라운드	"	1~4순위 - 3,000만원	
		5~8순위 - 2,000만원	
3라운드	"	1~8순위 - 1,000만원	
4, 5, 6라운드	"	자유 계약	

※ 상기 1,2,3 순위 라운드 계약금은 5년 기준이며, 5년 미만 계약 시에는 지명선수와 합의 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단, 분할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소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③ 의무지명

실업팀은 라운드에 상관없이 총 2명 이상의 선수를 지명하여야 한다.

위 조항의 위반 시 다음라운드 선수지명에 있어 최하위 순위로 하며, 총 2명의 선수 미 지명시 차기년도 선수드래프트에서 매 라운드 최하순위 지명권을 부여하며, 당해 연도 FA영입을 제한한다.

④ 연봉

1)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을 인정한다.

2) 수당은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다년계약이 가능하다.

3) 연봉은 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다년계약이 가능하다.

4) 실업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기본급연액은 여자는 2,400만원으로 한다.

5) 연봉 조정에 있어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구단과 선수는 조정위원회에 연봉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⑤ 출신학교 지원금

1) 지명구단은 지명선수 5년 기준 계약금 총액의 일정액(5천만원 이상 20%, 2000만원 이상 15%, 2,000만원 미만 10%)을 출신학교에 현금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2) 지명구단은 지명선수 5년 기준 계약금 총액의 일정액(5천만원 이상 20%, 2000만원 이상 15%, 2,000만원 미만 10%)을 출신학교에 아래와 같은 비율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며, 출신 학교 중 선수 선발 시 핸드볼 엘리트 팀을 운영 하지 않는 출신학교의 경우 최종 출신학교에 지원하도록 한다.

1-1 고졸선수기준 지원 비율

출신학교	지원 비율
초등학교	20%
중학교	30%
고등학교	50%

1-2 대졸선수기준 지원 비율

출신학교	지원 비율
초등학교	10%
중학교	15%
고등학교	25%
대학교	50%

3) 3년 미만의 계약 후 타 구단 이적의 경우, 이적을 받는 구단에서 선수의 잔여 계약금을 보준다. 단, 방출된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은 2년간 매년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사전 지명권을 1장 부여한다. 신생팀도 HKL리그 순위에 따라 지명권을 부여하나 HKL리그 참가 실적이 없을 경우 1순위를 부여한다. FA선수 역시 2년간 매년 3명까지 영입 할 수 있다. 단, 드래프트 세칙 ③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⑦ 기타

1)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3년간 실업선수 등록을 금지하고, 3년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실업에 입단할 수 있다. 만일 3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하여 실업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최초 드래프트 참가 5년 후 자유계약선수자격으로 입단할 수 있다.

2) 지명한 구단이 계약금 및 지원금을 불이행할 경우

구단이 합의된 계약금 및 출신학교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및 해당학교는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구단에 부여된 드래프트 상의 모든 권리를 유보시킬 수 있다.

3)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은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상기 1)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4) 고졸(대졸)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팀에 입단할 경우에는 해외 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구단에 입단하려면 본 35조항에 의거 입단해야 한다.

5) 실업 최초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및 연봉은 선수와 구단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6)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실업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신인선수 선발 시 계약 위반에 대해 협회 위원회 세칙에 따라 처벌된다.

7) 드래프트에 의해 입단한 선수는 입단 후 1년간 양도할 수 없다.

8) 협회에서는 2013년 입단을 위한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2012년 여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등 제도에 대해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이사회 승인 2014. 06. 25.

개정 상임이사회 승인 2015. 07. 01.

개정 이사회 승인 2017. 10. 13.